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 정책토론회 요약



□ 대주제: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 과제

- 가. 기조연설: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
- 나. 제1주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에 대한 성찰과 제언
- 다. 제2주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
 -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 개최일시: 2021. 5. 27.(목) 14:30 ~ 17:00

□ 사회자: 김경희 (강원중재부 중재위원,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 참석자

- 가. 기조연설자: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前 서울대학교 총장)
- 나. 발제자
 - 제1주제: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제2주제: 이웅성 (한서대학교 홍보 전공 교수)
- 다. 토론자
 -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판사, 前 한국경제 기자)
 - 강향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 지면 부족으로 참석자의 의견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유튜브 링크(<https://youtu.be/BQjUm83AR4Y>)를 통해 전체 다시보기 가능하며, 발제문 등이 수록된 종합보고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 정보 자료실 > 기타 간행물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에 게시돼 있습니다.

기조연설(성낙인)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언론의 자유 남용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충실히 마련하여 상호 규범 조화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 설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해 언론의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논평도 반론 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보도와 논평 사이의 구획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종합보도채널이나 닷컴 및 인터넷신문 등에서 전통적 매체의 지면제한과 같은 제약이 없어진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가 제 기능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상징적 금액으로 책정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다소 낮다. 위원회를 국가기관화하거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상임화 등도 현실성이 낮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무리한 제도와 기구의 확장은 자칫 언론탄압기구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위원회에 기사열람정지청구권(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나 기사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40주년에 이른 위원회는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 조정대상매체 확대 등에 따라 신청건수가 증가하였고 이 추세라면 조만간 현재 90명의 중재위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제1주제(이재진)

위원회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위원회의 설립이 언론기본법에 근거하였다는 태생적 한계가 주요 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춘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의 인적 독립성 제고는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특히 중재위원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으로 증설된 중재부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중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추천·위촉 방식의 변경은 또 다른 자의적 선임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재정적 독립성과 관련해 위원회의 재원을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하는 것은 독립성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 업무가 이해관계에 따라 외적인 압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어도 현재보다 재정적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언론중재법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현재 위원회의 독립성을 선언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거나 준사법적 독립기구로서 위원회의 정체성이 드러난 조항이 없다(언론중재법 제9조는 중재위원 개인의 독립성, 즉 ‘인적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관 자체의 ‘법적 독립성’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제2주제(이용성)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또는 잠재적인 뉴스서비스(플랫폼)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유사 뉴스서비스 또는 신(新) 유형 뉴스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팟캐스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펀딩 서비스, 인터넷방송이나 유튜브의 유사 뉴스서비스, SNS 뉴스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은 모두 전통적 미디어를 넘어선 신 유형 뉴스서비스를 법적으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 디지털미디어 환경과 인터넷 공간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대상매체 확대와 청구권의 확장이 필요하다. 법적 지위 부여 논의에 있어서 먼저 언론관계법상 언론의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 기존의 신문, 방송, 뉴스통신으로 유형화된 언론 개념을 확장하거나 ‘언론’과 ‘미디어’의 법적 정의를 별개로 할 필요성, 디지털 중개자 개념의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검색서비스사업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업자를 포함시켜서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가 필요한 대상매체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상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 수단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지정토론

① 차기현 : 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대안적 분쟁조정기구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길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며, 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추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함으로써 결국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 이에 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은 우려가 된다. 언론전담 재판부에 근무할 당시 기사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처리했다. 한편 언론사 입장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며 그로 인한 위축 효과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② 강향원 : 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중재위원 정원 증대 등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재원의 다각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동일·유사한 내용이지만 언론 등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신 유형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거나 일회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공인은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인에게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영역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

③ 구분권 : 위원회 인적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행 중재위원 위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 출신 및 언론 전문가의 중재위원 위촉 시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이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포털 등의 뉴스 화면과 달리 이용자의 검색 등 적극적 행동과 선택에 의해 당사자에게만 제공되는 결과물은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언론의 공정기능과 기록성, 책임성을 위해서는 인터넷 기사 삭제가 아닌 열람 차단·제한을 통해 지속된 피해를 막으면서 기록의 보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요구된다. 🌐